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15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5,000,000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명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4. 피고와의 사이에 경주시 D, E 일원의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인을 원고로, 수급인을 피고로, 용역대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인허가 및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불허가시 원고가 용역비 35,000,000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9. 7. 경주시 E 답 4,053㎡의, 2018. 10. 4. D 답 1,056평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9. 7. 5,000,000원을, 2018. 10. 10. 20,000,000원을, 2018. 10. 12. 10,000,000원을, 2018. 12. 14. 15,000,000원을 각 C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 2018. 10. 23. 15,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돈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합계 70,000,000원(위 가.항 기재 금액 포함)을 지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4. 11.경 '피고가 이 사건 돈사를 허가 받고 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 및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의 기망 때문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2019고단760호로 '피고는 2018. 12. 14.경 이 사건 돈사 신축 인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자신에게 주면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29. 2020노1738호로 피고가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편취금액 15,000,000원을 모두 공탁한 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 제6호증의 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돈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¹⁾으로서 이 사건 지급금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용역대금 35,000,000원을 설계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35,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지급금 중 2018. 12. 14.자 15,000,000원에 관하여 사기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2,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건축사사무소,

H설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8.

G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비 20,000,000원 중 선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0. 23.

H설계사무소에도 토목설계비 15,500,000원 중 착수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설계도를

작성받은 사실(원고는 설계도가 신고용에 불과할 뿐 허가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8. 10. 6.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 공사금액을

1,048,100,000원, 착공일을 허가 다음날로 정하여 이 사건 돈사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10.경 경주시 D, E 토지의 지상권자인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돈사의 건축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돈사의 신축에 관하여 주민공청회를 준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돈사의 신축 공사가 결국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 전부에 관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지급금 중 2018. 12. 14.자 15,000,000원의 부분에 한정된 점,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돈사 신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및 항의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에 편취의 마음을 먹고 2018. 12. 14.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인 55,000,000원의 지급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예비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20,000,000원 부분도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2)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일

1) 원고가 청구권원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면서 2021. 1. 13.자 준비서면(답변서)에서 특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원고는 갑 제7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3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내용과 조사의 상대방을 고려할 때 피고가 확정적으로 3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